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나. 의안번호 : 제1201호

다. 제출일자 : 2016. 5. 30

라. 회부일자 : 2016. 5. 31

2. 제안사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행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참여대상 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체의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 및 정비하는 사항임
- 또한 상위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안 별표 1)

나. 상위법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교통유발계수 상향 범위를 명시하고자 함(안 별표 2 비고 3)

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기한을 8월 10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 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발생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6. 4. 7. ~ 4. 27.) 결과: 별첨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¹⁾을 일부 감면받기 위해 시설물주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 및 정비하는 한편 상위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하는 것임

※ 참고 : 법상 교통유발부담금 설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나. 검토 의견

■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신설 및 경감비율 조정 등(안 [별표1] 및 [별표 2] 관련)

- 동 개정조례안 중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0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상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임

※ 참고 : 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관련 설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주차장 유료화”의 이행기준은 기존 1시간 무료 주차시간은 인정하던 것이 삭제되어 완전한 유료화가 아닌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없으며, “주차장 축소”의 이행기준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이상 감축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되는 등 원천적으로

승용차 이용이 억제될 수밖에 없도록 조치된 것임

- 또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나눔카 주차면 제공 및 이용금액의 50% 경감”을 신설하는 것은 자동차 공유문화 변화를 유도하는 나눔카 이용을 장려할 수 있고, 유연근무제 참여 대상을 “종사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정비사항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프로그램	경감률
이행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유료화] : 1시간 무료 주차시간 허용 삭제 ◦ [업무택시제] : 이용금액 100% 경감 → 이용금액 50% 경감 	- 20%
이행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카 이용] :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필수) 나눔카 이용금액의 50% 경감 ◦ [주차장축소]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이상 감축시 	10% 30%
경감률 상향	◦ [주차장축소] : 주차수요 감소효과에 따라 경감률 상향 (주차면수 “0” 20%→50%)	20~50%
이행기준 완화	◦ [주차장유료화] : 주차요금 기준 완화(공영노외주차장 요금 대비 100% → 80%)	30%
참여대상 완화	◦ [유연근무제] : 종사자 100인 이상 → 50인 이상	20%
명칭 변경	◦ [주차유도시스템] :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쉽게 변경 (→주차정보제공시스템)	10%
오기 수정	◦ [자전거 이용] : 이행기준에 따라 참여대상 오기 수정 (종사자 100인 이상 → 제한없음)	20%

- 한편, 서울시의회는 '14년 4월 조례 개정²⁾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면적별 차등적용 방안을 적용하는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53호)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 이용 억제 및 교통혼잡 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안 제11조 등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 소유자의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기한을 매년 “8월 10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기간(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종료 후 경감신청서 제출 기한이 10일에 불과하다는 현장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충실한 감축이행 실적 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함께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사항, 현행 조례의 변경 사항 및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이해도 제고 및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